

DDA 2008년 3월 농업협상*

신 유 선

DDA협상은 2008년 2월 9일 세부원칙 (Modalities) 수정안이 배포된 이후 2008년 연내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번 협상은 시장접근(Market Access)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1. 협상 동향

DDA 협상¹⁾은 2008년 2월 9일 세부원칙(Modalities)²⁾ 수정안이 배포된 이후 2008년 연내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팔코너(Falconer) 의장은 수정안 배포 이후 진행된 Room E³⁾ 협의에서 회원국 간 의견 대립으로 논의에 진전이 없자⁴⁾ 쟁점이 된 사항들에 대해 Room E 논의를 추가로 진행하였다⁵⁾.

이처럼 2월 말부터 3월에는 주요국 심층회의⁶⁾ 및 비공식 전체 회의⁷⁾ 등이 진행되어 수정안에 대해 각 국가 간에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3월 10일 G-33⁸⁾ 회의에서는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SP)과 개도국 특별 긴급 관세(Special Safeguard: SSM) 관련 제안서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루어졌고, G-10⁹⁾ 회의에서는 G-10 발언문 및 Annex E(TRQ 미소진 메커니즘)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2. 협상 동향

국내보조(domestic support)와 수출경쟁(export competition) 분야에 대한 논의는 부진한 반면, 시장접근(Market Access)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¹⁰⁾. 특히 특별품목(SP), 특별 긴급 관세(SSM) 및 TRQ 관리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 본 내용은 국내외 DDA 관련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유선 연구원이 작성하였다. (shinys@krei.re.kr 02-3299-4287)

관세감축

선진국은 수정안에 새롭게 제시된 선진국 최소 평균 감축률(54%)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개도국은 선진국 최소 평균 감축률에 대하여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¹¹⁾

관세감축공식 논의에서 의장은 수치범위 대신 범위의 중간치를 괄호()로 처리하여 논의에 진전을 이룰 것을 희망하였으나 모든 국가들이 기존 입장을 그대로 반복함으로써 논의의 진전은 이루지 못하였다.

의장이 제안한 관세 상한(Tariff Capping)¹²⁾의 대안에 대해서 G-10이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단순한 관세 상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수출국 및 G-20¹³⁾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강력히 제기되었다. 이에 의장은 관세 상한 대안이 G-10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철회하고 단순한 과세상한을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EU는 의장 수정안이 비농산물 협상(NAMA)¹⁴⁾에 비해 균형을 잃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관세감축공식의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의 목표 평균 감축률 설정이 선진국은 최소로 개도국은 최대가 되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이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하며, 민감 품목 감축률은 제외하되 관세경사 및 열대작물 감축률은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관세감축에 대해서 선진국은 수정안에 새롭게 제시된 선진국 최소 평균 감축률(54%)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개도국은 선진국 최소 평균 감축률에 대하여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표 1 최근 DDA 농업협상 동향 : 관세감축

	세부원칙 초안 (2007년 8월)	세부원칙 수정안 (2008년 2월)	최근 주요 논의내용
과세 감축	○구간별 감축률 제시	○선진국 최소 평균 감축률(54%), 개도국 최대 평균 감축률(36%)	○선진국은 최소 평균 감축률 반대, 개도국은 지지
관세 상한	○관세상한(세부원칙 :상한은 두지 않되, TRQ 증량으로 보상)	○세부원칙 내용 유지	○수출국은 관세상한 도입 주장, 수입국은 수정안 반대 입장 유지

민감 품목¹⁵⁾ TRQ 증량

EU가 민감 품목에서 강력히 기존의 입장을 반복함에 따라 수출국들도 강경한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전체적인 협상 분위기는 경색되었다.

이에 의장은 개도국 민감 품목 TRQ 증량의 대안에 대한 회원국의 입장을 요청하였다.¹⁶⁾ 이에 대해 일부 국가들은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것에 지지의사를 표명하였고, 미국은 이와 같이 TRQ 증량을 대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민감 품목 TRQ 증량에 대해서도 EU와 수출국의 입장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Data6 그룹¹⁷⁾에서는 민감 품목 범위, 세 번 쿼터 증량 폭(basket tariff line) 등의 문제와 함께 낙농품 등과 같은 중요 품목의 소비량 계산 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표 2 최근 DDA 농업협상 동향 : 민감 품목 TRQ 증량

	세부원칙 초안 (2007년 8월)	세부원칙 수정안 (2008년 2월)	최근 주요 논의내용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수는 4 또는 6% ○ TRQ 증량 3 또는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수 및 TRQ 증량 수준은 세부원칙 내용 유지 ○ 세번별 지정 및 품목단위 지정 관련 민감 품목 TRQ 증량 방식을 별도 (AnnexC) 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수 및 TRQ 증량 수준 관련 공감대 형성 ○ 세 번별로 지정하는 경우 TRQ 증량 방식에 대한 기술적 토의 진행(소고기 등 일부 품목, Data6 그룹)

특별품목(SP)18)

개도국들은 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 개발의 필요를 감안하여 특별품목을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G33 국가들은 특별품목(SP)개수 확대 및 일부 SP 관세감축 면제를 주장하였으나, 미국·호주 등 선진국은 SP개수 축소 및 예외 없는 관세 감축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G33 국가들은 특별품목(SP) 개수 확대 및 일부 SP 관세감축 면제를 주장하였으나 미국·호주 등 선진국은 SP 개수 축소 및 예외 없는 관세감축을 주장하였다¹⁹⁾.

미국, 호주, 캐나다 등 9개 국가는 SP와 관련하여 Room document를 배포하였다.²⁰⁾ SP 최대 개수는 전체 세 번의 8%, 모든 SP은 특별품목지표에 따라 지정, Tier1(전체 세 번의 4%) SP은 25% 감축, Tier2(전체 세 번의 4%) SP은 15% 감축, Tier2 SP 중 1%는 'super special' 품목으로 Tier2 감축률보다 낮은 감축률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일부 SP의 관세감축 면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강조하고 개도국의 현실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며 SP은 TRQ 확대 및 관세 상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전환 메커니즘(transfer mechanism)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의장은 전환 메커니즘(transfer mechanism)은 TRQ가 없는 개도국이 민감 품목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도입된 점을 설명하고 개도국에게 TRQ 증량 없이 민감 품목을 인정하는 경우 전환의 의미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G-33은 전체 세 번의 8%에 대하여 관세감축 면제를 주장하고 미국 등의 국가는 전체 세 번의 1%에 대하여 추가적 신축성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향후 논의를 통하여 두 수치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SP 특별품목지표(indicator)에 대해서 기존 입장이 반복됨에 따라 상세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²¹⁾ 선진국 보조금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의장을 비롯한 수출국들이 강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일부 국가들은 생산액, 소비량, 칼로리 섭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토의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G-33도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G-33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특별품목지표에 대한 대응도 기존에 작성한 G-33 공통입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SP 관련 수출국 제안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대응 논리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3월 11일에 제출한 G-33 제안서에서 SP와 관련하여 para 125, para 139bis, para 140bis 등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다.

G-33 제안서는 민감 품목과 특별품목 교환 메커니즘(para 126bis)과 관련하여 기존 의장 문안의 구조를 최대한 변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추가 특별품목(SP) 5%P의 대우에 대한 그룹의 입장을 명시할 경우 수출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단 현 수정문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신규가입국(Recently Acceded Member: RAM)²²⁾ (Para 125)과 관련하여 문안의 명료화를 위해 마지막 문장인 “An additional 1 per cent of tariff lines without tariff cuts shall be available”을 “tariff lines eligible for no cut shall be at least 1 percent higher than generally applicable”로 변경하였다.

개도국 특별긴급관계(SSM)²³⁾

각국 기존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발동수준 및 구제조치는 의장 제안 범위 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의장은 이 범위 내에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하였다²⁴⁾. 한편 의장은 양허수준을 상한으로 제시하는 것은 최종 순간에 정해질 것이나 개도국 SSG가 감축될 경우 SSM 품목범위나 양허수준 사한에 신축성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어 SSM이 도하 또는 UR 양허수준을 초과할 수 있는지 및 SSM의 추가관세 부과 기초가 양허세율인지 실행세율인지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의장은 실행세율과 양허세율이 차이가 없는 국가들에 대해 SSM을 부과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G33은 연간 발동 횟수 제한이 필요하지 않으며, 발동 기준 및 구제조치는 SSG보다 신축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3 최근 DDA 농업협상 동향 : SSM

	세부원칙 초안 (2007년 8월)	세부원칙 수정안 (2008년 2월)	최근 주요 논의내용
주요 내용	○대상품목 범위, 발동기준(trigger), 구제조치(추가관세부과,remedy)에 대하여 제시	○SSM 연간 발동 가능 품목수를 3 또는 8 품목으로 제한 ○발동기준은 G33제안 등을 고려하여 제시 ○구제조치를 UR 양허관세 이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G33은 연간 발동 횟수 제한이 필요하지 않으며 -발동기준 및 구제조치는 SSG보다 신축적이어야 한다고 주장 ○G33은 UR양허관세 이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의장은 반대 입장 표시)

이에 G-33는 SSM에 대해서는 의장 문서의 구조를 기초로 논의를 진행하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G-33는 그 동안 대사급 회의와 실무회의를 거쳐 마련한 그룹의 입장을 확정하여 3월 11일 의장에게 제출하였다. G-33 제안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SSM 발동 범위(Para 128bis)와 관련하여 모든 세 번이 SSM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The SSM shall have no a priori product limitations as to its availability, i.e. it can be invoked for all tariff lines in principle”의 끝의 ‘in principle’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다음으로 SSM 적용세율(Para 130bis)과 관련하여 G-33는 현행 법리상 SSG 적용세율을 양허세율 이상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이에 별도 메커니즘이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받아 이를 SSM 적용세율의 법리적 근거로 의장에게 제출하기로 하였다.

TRQ 관리²⁵⁾

쿼터 재할당 메커니즘에 대한 회원국 간의 논의가 이뤄졌다.²⁶⁾ Annex E를 기초로 한 논의 진행을 지지한 국가들이 있는 반면, 일부 국가는 Annex E의 불확실성 및 해결 기간 장기화 등을 들어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이에 의장은 Annex E를 재수정한다면 para. 155²⁷⁾를 합병하고 ‘3년 동안 미소진(underfill) 발생시 자동적으로 선착순 배정’의 내용으로 정리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EU는 전체 품목 중 일부만 민감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므로 이런 관점에서 세 번별 지정시 최소 증량률(floor) 설정에 반대하고,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TRQ 증량 후 증량분 세분화(subcategorization)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투명성 차원에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나, 자료가 추후 민감 품목 지정능력을 구속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고, 현재 수정안에 포함된 자료 제출 관련 문안은 논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TRQ 관리 세부원칙 수정안과 관련하여 호주 등 수출국은 쿼터 미소진 해결방안을 지지하였고 EU, 캐나다는 쿼터 미소진 해결방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스위스 등 G10은 쿼터 미소진 결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였다.

표 4 최근 DDA 농업협상 동향 : TRQ 관리

	세부원칙 초안 (2007년 8월)	세부원칙 수정안 (2008년 2월)	최근 주요 논의내용
주요 내용	○ 논의방향만 제시	○ 수입허가절차협정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TRQ 관리 규정들을 제시 ○ 쿼터 미소진 해결방안을 별도(Annex E)로 규정	○ 호주 등 수출국은 쿼터 미소진 해결방안을 지지 ○ EU, 캐나다는 쿼터 미소진 해결 방안에 대한 수용 가능성 시사 ○ 스위스 등 G10은 쿼터 미소진 해결방안에 대한 반대 입장 유지

G-10은 Annex E의 미소진 문구 수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미소진 쿼터가 발생하여도 수입국이 입증할 경우 미소진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상황으로 크게 시장 상황과 SPS를 규정하기로 하였으나, 수출제한을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수출제한을 시장 상황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기로 하였다.

G-10은 이러한 논의 내용을 반영한 안을 검토하기 위해 후속회의를 개최하였다. 후속회의에서는 Annex E와 관련하여 수출제한조치(export restricting measure)와 흉작(poor harvest)을 Annex E 수정 제안에서 삭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일부 국가의 거부로 흉작은 삭제하되, 수출제한조치는 수출국들과 협의하기로 하였다.

특별긴급관계(SSG)²⁸⁾

SSG 지속지지 및 SSG 적용범위 1.5%는 너무 작다는 지적, SSG의 즉각 폐지 그리고 개도국 SSG 현행유지라는 세 가지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²⁹⁾

EU는 SSG를 철폐하는 대신 SSG 대상품목의 관세화를 지지하고 있다. 이에 G-10의 일부국가는 EU가 모든 SSG 대상품목을 관세화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표 5 최근 DDA 농업협상 동향 : SSG

	세부원칙 초안 (2007년 8월)	세부원칙 수정안 (2008년 2월)	최근 주요 논의내용
주요 내용	철폐 or 감축 제안	선진국 경우 SSG 철폐 또는 대상 품목 개수를 1.5%로 감축 할 것을 제시	스위스 등 수입국은 SSG 개수 확대를 주장

경사관세³⁰⁾

경사관세에 대해서는 직상위 구간의 관세 감축율을 적용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개도국의 경사관세공식 적용문제는 캐나다 및 미국이 SP 제외를 제시하면서 개도국도 포함될 것을 주장하여 입장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품목범위도 개도국들의 주장에 따라 일부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G-10은 가공품 해당 구간의 관세감축율과 직상위 구간 감축율의 중간치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최상위 구간에 해당될 경우 최상위 구간과 차상위 구간의 차이를 추가 감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열대작물³¹⁾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등 열대작물 수출국들은 열대작물 목록 확대와 대폭적인 관세감축을 주장하였으나, 수입국은 열대작물 목록 축소 및 열대작물 목록 중 일정 비율만 열대작물 감축률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³²⁾

G10은 추가 감축을 수용할 의사가 있으며 열대작물 목록은 indicative 목록이어야 하고(선별적 적용) 비열대 지역에서 생산되는 작물은 목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사관세에 대해서는 직상위 구간의 관세 감축율을 적용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개도국의 경사관세공식 적용문제는 캐나다 및 미국이 SP제외를 제시하면서 개도국도 포함될 것을 주장하여 입장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EU는 핵심 목록(core list)과 indicative 목록을 동시에 작성하는 방식을 지지³³⁾하고 있다. 열대작물과 관련하여 EU의 제안대로 핵심 목록에 중요 품목들이 포함될 경우 우리나라가 포함된 G-10 국가들은 이 목록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열대작물과 관련하여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3. 양우 전망

선진국과 개도국, 수출국과 수입국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고위급, 각료급 회의 전까지 타협안 도출을 위한 협상이 지속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미 WTO 사무총장은 3월 고위급회의, 4월 각료급회의를 개최하여 농산물·공산품 등의 부문 간 협상(horizontal process)³⁴⁾을 추진하고, 연내 DDA 협상 타결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대선 등 정치적 상황 및 부문 간 협상 범위에 대한 회원국 간 의견 차이로 인하여 연내 타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³⁵⁾ 또한 EU는 그간 DDA 협상타결에 적극적인 입장이었으나, 최근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들이 DDA협상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어 신축적 입장을 철회하였다.

이처럼 선진국·개도국, 수출국·수입국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고위급·각료급 회의 전까지 타협안 도출을 위한 협상이 지속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4. 양우 일정

- 2월 22일: 농업협상전체회의
- 3월 말~4월: 세부원칙(Modalities) 합의를 목표로 내각회의
- 12월: 최종채결의 목표기한

참고자료

농림부 보도 자료(www.maf.go.kr)

농림부, 한 번에 끝내는 알기 쉬운 DDA협상용어 50선, 2007.

농림부, DDA/FTA 농업협상 추진동향, 2008.2.12

농림부 해외농업 사이트(www.insidetrade.com)

WTO,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TN/AG/W/4/Rev.1, 2008. 2

- 1) UR협상 결과의 토대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 하에 2001년 11월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아홉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 2) 세부원칙은 관세와 보조금을 감축하는 폭, 감축기간 등 구체적 수치를 담은 문서인데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각국별로 세부원칙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적은 문서 즉, 이행계획서(Schedule)를 WTO에 제출한다. 이행계획서가 세부원칙에 따라 잘 만들어 졌는지에 대해서 WTO 회원국들이 검증하고 검증이 끝나면 DDA 협상이 종결된다.
- 3) "Room E" 참가국과 가입된 그룹 현황 : 아르헨티나(케언즈 그룹,G-20), 호주(케언즈 그룹), 베닌(Cotton-4, 아프리카 그룹, 최빈개도국(LDC)), 아프리카-카리브해-태평양지역 그룹(ACP), 브라질(케언즈 그룹,G-20), 중국(G-33, G-20), 콜롬비아(케언즈 그룹, 열대작물 그룹), 코스타리카(케언즈 그룹, 열대작물 그룹), 쿠바(G-33, 소규모취약국가(SVE)), 도미니카공화국(G-33, 소규모취약국가(SVE)), 에콰도르(열대작물 그룹, 신규가입국), 이집트(G-20, 아프리카그룹), EU, 인도(G-33, G-20), 인도네시아(G-33, G-20, 케언즈 그룹), 자메이카(G-33, SVE, ACP), 일본(G-10), 케냐(G-33, 아프리카, ACP), 한국(G-33, G-10),레소토(LDC, 아프리카, ACP), 모리셔스(G-33, ACP, 아프리카), 말레이시아(케언즈 그룹), 멕시코(G-20), 뉴질랜드(케언즈), 노르웨이(G-10), 파키스탄(케언즈 그룹, G-20, G-33), 파나마(G-33, 열대작물), 파라과이(케언즈 그룹, G-20, 열대작물), 필리핀(G-33, G-20, 케언즈 그룹), 스위스(G-10), 태국(케언즈 그룹, G-20), 터키(G-33), 우간다(아프리카, LDC, ACP), 우루과이(케언즈 그룹, G-20), 미국, 베네수엘라(G-33, 열대작물, G-20).
- 4) 의장은 2월 18일에 진행된 Room E 협상에서 획기적인 진전은 없었으나 방대한 의장 수정안을 세세하게 검토하는데 의의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 5) 2월 18일~19일에는 관세감축공식, 민간품목, 경사관세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2월 21일~22일에는 TRQ 관리와 특별긴급관세(SSG), 특별품목(SP)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어 25~26일에는 그동안 진행된 사항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루어졌다.
- 6)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30여 개국이 참가한다.
- 7) WTO 회원국이 참가한다.
- 8) G-33은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필리핀 등 개도국 SP를 옹호하는 나라들의 모임으로 개도국 특별품목 개수를 충분하게 많이 인정하고 관세감축을 적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룹이다.
- 9) G-10은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농산물 순수입국 모임으로 농산물 관세를 지나치게 많이 감축하는데 반대하는 그룹이다.
- 10)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은 DDA 농업협상의 3대 분야이다. 농산물 관세감축분야를 시장접근, 농업보조금 감축과 제한을 국내보조,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과 식량원조 제한, 농산물 수출을 위한 금융지원 제한을 수출경쟁이라고 한다.
- 11) 세부원칙 수정안에서 선진국의 경우 민간품목 감축률을 포함한 평균 감축률이 최소 평균 감축률보다 낮을 때 추가적으로 관세감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12) 관세 상한은 일정한 수준을 넘는 관세는 무조건 일정한 수준으로 끌어 내리자는 개념이다.
- 13) G-20은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등 개도국 그룹을 말한다. 큰 틀에서 보면 미국, EU 등 선진국을 견제하는 개도국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 14) DDA 협상에서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업 이외의 물품 즉, 공산품에 대해서도 협상을 하고 있다. 농업협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반영하여 농산물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비농산물 협상'이라고 한다. 나머지는 선진국과 G-20, G-33, NAMA11, 최빈 개도국(LDC), African Group, 소규모취약국가(SVEs), Cotton4 countries 대결구도로 움직이고 있다.
- 15) 민간 품목은 관세감축을 덜 할 수 있다. 다만 대가로 수입쿼터(TRQ)를 주어야 한다. 민간 품목의 개수는 국별로 전체 세 번(tariff lines)의 5% 내외에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품목의 대우 즉, 관세를 얼마나 적게 감축하고 TRQ를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는 DDA 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 16) 감축률 이탈 폭 축소, 감축률 이탈 폭 유지시 이행 기간 축소 및 감축률 이탈 대신 이행 기간 연장이 해당된다.
- 17) 미국, 캐나다, EU, 스위스, 노르웨이, 일본이 이 그룹에 해당한다.
- 18) 개도국들은 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개발의 필요를 감안하여 특별품목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품목 개수와 대우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선진국, 농산물 수출개도국들과 이를 가능한 확대하려는 농산물 수입 개도국 간 입장차가 크다.
- 19) 특별품목은 개도국에게만 인정되는 것이며 일반품목보다 낮은 감축률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 2월 22일 Room E 회의
- 21) 2월 25일 Room E 회의
- 22) WTO에 새로 가입한 나라들은 가입과정에서 관세와 보조금을 많이 깎았기 때문에 DDA 협상에서 관세와 보조금 감축을 적게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감축폭은 협상 중에 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가입국으로 분류할 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으나 DDA 협상이 출범한 2001년 11월이 기준 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 23) DDA 협상에서 개도국을 위한 특별긴급관세(SSM)를 만들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협상중인데, 기존의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SSG)와 유사한 내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24) 2월 25일 Room E회의
- 25) 각국별로 수입쿼터를 허용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게 된다. 예컨대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대가로 국내산 농산물을 사라는 조건을 붙이기도 한다. 이렇게 수입쿼터를 운영하는 것을 수입쿼터 관리 즉 TRQ administration이라고 한다. DDA 협상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26) 2월 21일 Room E회의
- 27) Members shall, accordingly, provide for an effective re-allocation mechanism [which ensures that, where licences held by private operators are less than fully utilized for reasons other than those that would be expected to be followed by a normal commercial operator in the circumstances, all feasible steps shall be taken to provide re-allocated access to tariff quotas as soon as possible. If this is legally and practicably feasible within a given tariff quota allocation period, the re-allocation shall be done within that quota period. If not, changes to the licence allocation arrangements tailored to remedy the problem identified shall be implemented no later than the commencement of the next licensing perio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outlined in Annex E].
- 28)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농산물에만 적용하는 SSG 제도가 탄생하였다. 수입물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국제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자동적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를 '구제조치(Remedy)'라고 하기도 한다. SSG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국별로 특별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농산물을 이행계획서(Schedule)에 표시해 두었다.
- 29) 2월 21일 Room E 회의
- 30)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는 농산물의 가공도가 높아질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현상인데 농산물 가공업을 많이 보호하는 선진국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DDA 협상에서는 가공도가 높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원재료 농산물에 비해 관세를 좀 더 감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 31) DDA 협상에서 열대작물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열대작물에 대한 관세를 많이 깎으려는 움직임이 있다. 관건은 열대작물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인데 쉬운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 32) 파라과이 등은 케언즈 그룹의 열대작물 목록(134개 세번, HS 6단위)을 바탕으로 목록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며 수입국들은 비열대지역 생산 품목 제외를 주장하고 있다.
- 33) 핵심(core) 목록은 대우의 선별적 적용이 불가능하다.
- 34) DDA협상은 최종적으로는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등 모든 분야를 동시에 일괄 타결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으므로 각 분야별 협상을 거친 후 분야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부문 간 협상 과정을 거치게 된다.
- 35) EU 등은 부문 간 협상에 서비스 및 규범 분야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 브라질 등 수출국들은 부문 간 협상에 농업 및 비농산물 협상만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